

운영규정 개요

I. 기본정보

기관명	엘라재가복지센터	시설종류 (기관기호)	방문요양(21162000465)
설치일자	2025.08.01	전화번호	02-845-9484
		FAX	02-6080-9484
소재지	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171	교통 및 주차시설	신림역5번출구854m,신대방역1번출구에서 964m/버스:남부초등학교,남부초등학교후문하차(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)
이용대상	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		

II.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1. 이용정원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.
2. 이용자 모집방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, 기관 홈페이지, 지인소개, 대상자 방문상담, 간판, 홍보지, 관할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Ⅲ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① 급여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, 이용자(보호)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급여계약	① 이용계약은 대상자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(보호자)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. ②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”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 ③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(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).
계약기간	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급여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
계약해지	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④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,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
신원인수인 권리	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신원인수인 의무	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
전문인배상 책임보험	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.

IV.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(운영규정 참조 : 사무실내 비치)

[illegible]